<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84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6-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02

캡시(Cabsy)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엠씨모빌리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에스엠씨모빌리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608호(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대표전화: 1551-7783 가맹사업부전화: 1551-7783

팩스번호: 02-6499-778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서류

별첨 [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 [2]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 [3] : 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운영 정책

별첨 [4]: 서비스 품질 등급 관리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주 소				
상호	캡시(Cabsy)	서울특별시 송파구 파 테라타워2)	- 송파대로	르 201, 비	동 60	8호(문정동, 송
(7) 2 2 2 3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에스엠씨모 빌리티	2024-03-28	2024-04-04	강영석	1551-77	783	02-6499-7783
277	법인등록번호	110111-8906658	사업자등록번호 49		99-81-0304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도 201, 비동 608
6) 6)	ار دی د	-1) x) (C 1)	호(문정동, =	송파 테라타워2)	
임원	강영석	캡시(Cabsy)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영석	1551-7783	02-6499-778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201, 비동 608
43.63	임원 김진현 %	-11 -12 (G 1)	호(문정동, -	송파 테라타워2)	
임원 		캡시(Cabsy)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영석	1551-7783	02-6499-778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_	_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해당없음	_	_	_	_

일부를 인수함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_	_	-	I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_	-	_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캡시(Cabsy)	-
상 호	캡시(Cabsy) OO점	
상표(서비스표)	_	
광고	Cobsy	가맹택시 외관
그 밖의 영업표지	Cabsy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_	_	_	_	_	_
2023년	_	_	_	_	_	_
2024년	343,340	241,991	101,348	297,322	-98,814	-98,651

※ 별첨5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르	현 직위	지이 사업경력			
7 正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강영석	대표이사	2024.03.28~ 현재	(주)에스엠씨모빌리티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김진현	감사	2024.03.28~ 현재	(주)에스엠씨모빌리티 감사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_	-	_	_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식천구(청)	
*2024년 12월 31일	2	0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출원번호 및	소유자	존속기간
53 	전디내공	등록신청	등록번호	(등록신청자)	만료일

		여부(일자)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Cabsy 캡시	영업표지, 상표사용 35류	출원일자 : 2024.04.16	출원번호 : 4020240069590	(주)에스엠씨 모빌리티	출인 건
Cabsy 캡시	영업표지, 상표사용 39류	출원일자 : 2024.04.16	출원번호 : 4020240069591	(주)에스엠씨 모빌리티	출원 중

[※] 출원 중인 상표는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예정

2. 해당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엠씨모빌 리티	캡시(Cabsy)	강영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608호(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아(C.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캡시(Cabsy)	운송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6	2022.12.31	•	<i>c</i> 2	2023.12.31		6	2024.12.31	. •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	_	-	-	-	_	-	_
서울	ı	_	-	_	_	_	1	_	_
부산	ı	_	ı	_	_	_	ı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ı	_	-	_	_	-	ı	_	_
울산	-	_	_	_	_	_	-	_	_
세종	1	_	_	_	_	-	ı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	_	ı	_	_	_	-	_	_
충북	_	_	_	_	_	_	-	_	_
충남	_	_	-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	-	-	-	-	-	_	_
경남	-	_	-	_	_	_	-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_	_	_	_	_	_
2023	-	_	_	-	-	_
2024	=	=	=	=	-	_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000.41.3	*	*2024년 가	맹점사업지	-의 연간 피	명균 매출액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연간 평균	간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수 -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_	_	_	_	_	_	_	_
서울	_	_	_	_	_	_	_	_
부산	-	-	-	-	-	-	-	_
대구	-	_	-	_	_	_	_	_
인천	-	-	-	-	-	-	-	_
광주	-	-	-	_	_	_	_	_
대전	_	-	-	_	_	_	_	_
울산	_	_	-	_	_	_	_	_
세종	-	-	-	-	-	-	-	-

경기	_	-	-	_	_	-	-	_
강원	_	_	_	_	_	_	_	_
충북	_	_	-	_	_	_	_	_
충남	_	-	-	-	-	_	-	_
전북	_	_	-	-	-	-	-	_
전남	_	_	-	-	-	_	-	_
경북	_	_	_	_	_	_	_	_
경남	_	_	-	_	_	-	-	_
제주	-	-	-	-	-	-	-	_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가맹점 없음, 가맹본부의 공급 물류 가 없으며 택시업의 특성상 각 가맹점의 매출 파악이 어렵습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	----	----	---------------------------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신문, 인터넷	*2024.1.1~12.31	0	0	0	
판촉	_	*2024.1.1 12.31	_	_	-	
합계	_	_	0	0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 해당사항 없음(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 이용)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_	_	_	-	_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_	_	_
설비, 기기, 비품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미예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_	_	-	-	_
교육비	60	계약체결 후 예치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후	1인당
총계	60	_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 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	-	_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	-
교육비	60	부가세 포함 1인당 교육비
보증금	_	_
합계	6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차량내외설비	가맹본부	253	-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갓등, 캡시 데칼외,고객안내 스티커 연동기기 *공임비 포함
기사복장(유니폼)	가맹본부	45	_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계절별 기사복장 (티셔츠,가디건)
총계	-	298	_	_	_	택시 1대 및 기사 1인 기준

-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선정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입문교육, 보수교육, 클레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면허 소지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
- ※ 가맹점사업자들 간 사업 활동 방해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8항)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소속 근로자가 동일 사업 구역 내 다른 가맹점에서 가맹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사로 영업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간 분쟁 예방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다른 가맹점 영업활동 종료일로부터 90일 까지 가맹서비스 수행기사 등록을 유보할 수있다. 다만, 이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이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이전소속 가맹사업자가 동의하거나 해고 또는 개인의 사유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운송업 특성상 점포의 외부, 내부 인테리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택시)에 대한 설비. 기기 설치 및 장착은 필요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지원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함).
- ※ 합의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설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맹점사 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4조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원 받 은 내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 업자)	-	-	_	브랜드이미지, 상 품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 업자)	-	_	-	가맹점모집+상품 광고
	가맹본부	일부 분담	익월 말일	실시 전	실시 후	가 맹 점 모 집 광 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익월 말일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운행표준습득 교육 -입문 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60,000	영업시작 익월 15일	실시 전	실시 후	※입문교육 (신규 기사 1인당)
운행표준습득 교육비 -보수교육, 특별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실비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보수교육 ※특별교육 (기사 1인당)
 플랫폼 솔루션 이용료 	가맹본부	"운송수익금" 합계)의 2.8%(부가세별 도) (단,사전확정탄 력요금 또는 탄력요금) 서비스의 경우 , "운송수익금"(부가세포함) 의 2.8%(부가세별 도) + 1.00을 초과하는 부가서비스요 금의 1/2	매월 15일	-	_	후불
• 효율적인 운행 관리 및 영업지원/ 기타 대행	가맹본부	별도고지	매월 15일	-	_	후불 이용승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량 운행 관리, 안전/청결 관리

서비스 이용료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_	_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환경 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_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 한 지원"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 자의 귀책사유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년도 차액 가맹금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공급품의 운영	공급품 상태확인 및 비품 운영상태 조사 실시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팀
운영정책 관련점검	별첨3 참고	수시	문의: 가맹사업팀
서비스품질관리	별첨4 참고	수시	문의: 가맹사업팀
회계처리	가맹금 미지급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및 패널티	매월 1회 / 별도안내	문의: 가맹사업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차량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

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가맹본부가 주무관청의 가맹운송플랫폼사업 면허종료, 운송 앱플랫폼 제공사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 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캡시(Cabsy)"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업 설비 기타 일체를 "캡시(Cabsy)" 가맹사업의 허가 및 권리의 사용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가맹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 설비 기타 일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기간만료 또는 합의해지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결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가맹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파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필수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단위: 원)

人山	품목(단위)	공급가격(구부	
순번	중국(인귀 <i>)</i>	상한	하한	一 丁七
_	-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필수품목 공급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_	ı	-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_	_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_	_	_	-	П	l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서비스(고객 제공서비스)	내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캡시(Cabsy) 프리미엄 택시 전용호출	별도 관리된 차량 및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중형 브랜드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		1회 위반: 구두	프리미엄 라이 드 전용호출 VIP 택시 호출 프리미엄 전용 서비스
캡시(Cabsy)예약/ 대절택시	예약/대절전용 택시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2회 위반: - 서면	사전예약 전세 택시, 맞춤형예 약택시, 예약형 택시 서비스
캡시(Cabsy) 비즈 업무택시	기업/관공서 업무용 택시서비스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비즈니스 모빌 리티, 커머셜 택시
서지요금제 (시행 시 표기되는 서비스명칭은 달라질 수 있음)	선불 또는 후불 등으로 별도 관리된 차량 및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탄력요금제 중형 브랜드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		해지	플랫 요금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에 명시된 내역)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	_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구역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_	-	_	_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_	_	_	_
근다인	_	_	_	_
홈쇼핑	_	_	_	_
전화권유판매	_	_	_	_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_	_	_	_

※ 해당 사항 없음(직영점, 가맹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_	_

- ※ 해당 사항 없음(직영점, 가맹점 없음).
-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인력의 확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바)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 	가맹계약서 제39조

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조항
 가)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라)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사)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설비(택시차량)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자) 가맹계약의 의무 조항 또는 특약 조항 위반 시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조항
Ċ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시된 경우	
Ċ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가맹계약서
Ċ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3) 가맹사업의 통일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48조 3항
(4)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 한다.

재조정 절차	협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수정 계약서(안)를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서면으로 통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기대시어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캡시(Cabsy)'와 동일한 업종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근무	종업원 및 택시 운전면허 교대자	개인택시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만 대체 가능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 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현장점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장 또는 차량방문 → 청결도/차량설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미스터리 쇼퍼	담당자가 차량 암행승차 → 매뉴얼 준수체크 → 평가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 거	분담비용		ㅂ다저ᅴ	нјэ
丁正	성격	본사	가맹점	분담절차	비고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모집+ 상 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분담없음	
광고전체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광
행사	운수종사자 모집 광고	광고비 등 대해 분	제반비용에 담 협의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행사종료 후 분담금 확정 → 확정 후 익월 말 분담금 납입	고
	할인행사	100%	_		
	증정행사	100%	_	분담없음	
	팜플렛 등 제작	100%	_		
판촉행사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ㄸ	다라 상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행사종료 후 분담금 확정 → 확정 후 익월 말 분담금 납입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할인금액의 80%	할인금액의 20%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월 할인금액 제시 → 제휴서비스 종료 익월 말 분담금 납입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 금과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설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맹점사 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4조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원 받 은 내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택시 1대 기준,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14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_	
상담	- 전화, 방문 상담 - 사업내용상담	_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 전 제공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 협의	D-7	10p~11p참조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 증권 교부 및 가맹본부 에 가맹금 지급. 단, 은행 예치 제도 이 용 시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 치	D-7(1일)	
기사 교육 실시	- 운행표준습득교육 (입문교육) 실시	D-3(1일)	
차량설비설치	- 차량설비 설치 및 물품 제공	D-1(1일)	
가맹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 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안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업의 통일성을 유자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어 공사비 용(장비·집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일 채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사업자 라면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사업자 가맹본부 가 를 포환 경우개선 이 가망본부 가 를 포환 경우개선 의 학생은 지정한 여 전에는 되어 의 기막 보는 지정한 여 전에는 되어 의 기막 보는 기막 본부 가 를 포한 경우가 된 기막 보는 기막 보는 기막 보는 이 나는 이 되어 되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 정화에 반 해 12조의2 규정에 의 해 부담제 외사유 해 당 시	○ 점 경에 본 의 없 유 약료의 영 도 되 경 가 부 액 군 간 비 는 이 가 부 책 는 로 이 (해 업 포 는 우 맹 부 중 여 에 례하 함 함) 이 가 부 액 한 간 비 는 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 다만, 택시 운송사업의 특징상 무점포(점포 시설 공사가 필요 없는)에 해당되는 가맹 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 업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	문의: 가맹사 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_	-	1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교육	서비스필수교육,고객응대 역량강화 등	이론, 실습	운행개시 1일 전	개점 후 실시 필수 이수
보수교육	운행 서비스 향상 교육	이론, 실습	필요시 통보	개점 후 실시, 참석 통보시 필수 이수
특별교육	운행관리솔루션활용 품질 정책 및 브랜드 택시 매뉴얼 미준수에 따른 교육/또는 기타교육	이론, 실습	필요시 통보	개점 후 실시, 참석 통보 시 필수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운행표준습득교육 - 입문교육	1일/4시간	60,000원	신규 기사 1인당
운행표준습득교육 - 보수교육	2~8시간	무상	필요시 협의
운행표준습득교육 - 특별교육 (재교육/기타교육)	2~8시간	무상	필요시협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가맹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 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 사자가 원하여 계약당사자 외 인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 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실시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가맹택시)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_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551-778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곳개서 가맹계약서 및 이근 가맹전혀화

<u> </u>	<u> </u>		10 11 11 70	
	제공 .	<u>확인서</u>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 ¹	7.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호	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	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이	<u> 합니다.)</u>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로) ANO 단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조	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	O커피숍 내, 이메일)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칭	히(수렁하)	영 <i>을</i>)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기메비 -	계고 다다기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1	<u>, , , , , , , , , , , , , , , , , , , </u>	<u></u>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즉	∤성(24시 · 현	령태로), 예).	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0 — 0 - 1, , ,	가맹	<i> 점현황문서</i>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 <u>수령하였음</u> "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	공 담당	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7	- - - - - - - - - - - - - - - - - - -	서, 인근 /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	- - - -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별첨 [3] : 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운영 정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운영 정책이며, 이외에 사항에 대한 가맹사업 관련 운영 정책은 별도 고 지 및 안내되며 가맹본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별첨 [4]** : 서비스 품질 등급 관리

시행근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서비스 품질 등급 관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별도 서면 동의 없이 공지로 안내 예정.

별첨5: 가맹본부 재무증명

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